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김경호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주제어: 베껴쓰기,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 저작권침해, 무단전재, 공정 이용, 배타적 권리

1. 문제제기

언론학자 유진 곳원은 ‘베껴쓰기’라고 통칭되는 타 언론사 보도기사의 무단전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은 누구나 사소한 정도의 표절은 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론 기관이나 기자들은 나중에 필요할 듯싶은 기사철을 주머니나 서랍, 혹은 가방 속에

* kimgyongho@cheju.ac.kr

보관해두고, 때로는 자료실이라는 이 기사철을 끄집어내서 그 중 필요한 단어 나 문구, 혹은 전체 문장들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 썼던 기사라면 별문제가 없지만 때때로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사 내용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써먹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유진 굿윈, 우병동 옮김, 1997, 161쪽). 굿윈의 지적처럼, 무단전재 행위는 언론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의 경쟁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박인환, 1999; 안상운, 1999).

152년의 정론을 자랑하던 ‘뉴욕타임스’의 자존심은 한 젊은 기자의 표절과 기사 허위작성으로 인해 일순간에 곤두박질쳤고, 국내 신문사들이 경쟁사의 특종기사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전재하는가 하면,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통신사가 그대로 베껴 쓰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매체가 오프라인 언론의 기사를 베껴 쓰거나, 반대로 오프라인의 언론들이 온라인 언론의 보도기사를 무단전재하는 등 온·오프라인 매체 간의 표절행위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후발 통신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선발 통신사의 기사를 도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무단 전재행위가 언론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음이 알 수 있다. 주요 중앙 일간지가 통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건수가 1일 평균 16.2건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연합뉴스, 2004). 설상가상으로 포털에 의한 언론보도 기사 게재도 이러한 저작권 이슈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아래의 사례들은 소송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비교적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우이다. 첫 번째 사례는 통신사가 방송사의 기사를 표절한 경우인데, 연합뉴스가 MBC ‘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한 “사기 엑스포” 기사를 자사가 작성한 춘천발 뉴스로 배포하여 문제가 되었다(윤성환, 1999). 연합뉴스는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전시관에서 판매된 기념품이 수입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었음을 지적하면서 MBC 2580 방송내용을 크레딧을 붙이지 않고 보도한 것이다. 지역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중앙의 언론사가

지역 언론보도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례는 반대로 지역의 스토리를 해당지역 언론사가 중앙방송 보도에 의존했고, 그나마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방송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여 논란이 되었다.

정치적 이념이 전혀 다른 신문사의 사실을 표절한 경우도 있다. 2001년 4월 9일자 한겨레신문의 사실 “화염병은 사라져야 하지만”은 조선일보의 4월 3일자 사실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영태, 2001). 한겨레 사실은 “(특히) 화염병 시위는 진압경찰은 물론 (주위의) 시민과 점포들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된다. 그 뿐만 아니다.) 화염병 시위는 그 섬광과 이글거리는 화염이 시위대의 군중심리를 자극해 더욱 극렬성을 띠게 만든다”며 화염병 시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화염병 시위는 진압경찰은 물론 연변의 시민과 차량, 점포들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그 섬광과 이글거리는 화염이 시위대의 군중심리를 자극해 더욱 극렬성을 띠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 사실을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은 결국 지면을 통해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논설위원을 면직처분했다.

외국 인터넷 방송의 기사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면서 이를 자사의 특종으로 보도하여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CBS 노컷뉴스가 한국인 아내를 토막살해한 영국인 남편에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교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를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보도했다고 밝혔으나, 이 기사는 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유케이라이프스’가 보도한 것으로 노컷뉴스 통신원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상만, 2005). 노컷뉴스는 “한국인 아내 토막살해 영국인 남편에 ‘과실치사’ 판결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와 포털에도 게재했다. 이후 이 기사는 다른 언론에 의해 수차례 인용됐고, 포털의 ‘많이 읽은 기사’ 순위에도 오르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방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일보보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마치 자사의 서울주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보도했고(민임동기, 2000), 대전매일도 연합뉴스의 기사를 두어 차례에 걸쳐 베껴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일보 논설위원이 한국경제신문의 기명 칼럼을 아이디어에서부터

표현까지 도용한 경우도 있다(강을영, 1997).

이 밖에도 한겨레신문이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재산내역을 특종으로 보도한 일요신문에 의존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¹⁾ 스포츠투데이가 강남패션에 관한 동아일보의 한 달 전 칼럼을 똑같이 베껴 실은 사례,²⁾ 매일경제신문이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³⁾ 그리고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사건 관련 인물들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특종을 한 일요신문의 기사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베낀 경우⁴⁾ 등 타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보도기사의 표절문제가 언론 관련 주요 이슈가 된다. 근래에 들어 가장 높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제이슨 블레어 기자의 표절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샌 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Saint Antonio Express-News)’가 블레어의 기사도용 사실을 ‘뉴욕타임스’에 통보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타임스는 조사를 통하여 블레어의 표절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별 기고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타임스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블레어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블레어가 작성한 6백여 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블레어가 인턴과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보스턴그로브(Boston Globe)’도 블레어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파장이 다른 언론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블레어 기자는 물론 타임스의 편집총국장과 편집국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Steinberg, 2003. 5. 29).

1) “전두환 재산보도 표절시비: 오마이뉴스 한겨레보도 일요신문 재정리”, 오마이뉴스 2003년 5월 28일자 기사 참조

2) “스포츠투데이, 동아일보 기사표절:<강남패션>기사 한달전 컬럼 그대로”, 미디어 오늘 2001년 3월 15일자 기사 참조

3) “매경, 환경기사 그대로 베껴”, 미디어 오늘 1997년 10월 29일자 기사 참조

4) “일요신문 특종 훔쳐간 동아와 조선”, 미디어 오늘 2003년 6월 30일자 기사 참조

불행하게도 타임스의 표절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블레이 사건이 있는 지 불과 닷새 만에 오클라호마 폭탄테러 기사로 폴리처상을 받은 릭 브래그 기자가 기사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타임스의 신뢰도에 또 한번의 타격을 가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플로리다 해변의 무분별한 개발과 그로 인한 굴 채취업자들의 당면문제를 다룬 것으로 브래그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상은 프리랜서 웨스 요더가 대부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임스는 다시 한번 사고(社告)를 통해 요더가 제작한 기사로 출처가 밝혀졌어야 옳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보도기사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비판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도기사를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Peterson, 1995; Rahl, 1962). 본래 보도기사는 사건과 사고를 보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사안을 놓고 기자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기사로 작성될 수도 있는데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기사의 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게이트키퍼의 전 과정을 보다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도기사를 창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일부에서는 저작권법 제7조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조항과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예외 조항’을 들어 무단전재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⁵⁾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보도기사의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시사보도의 저작권 인정 근거는 무엇인가?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어떠한 근거로 시사보도

5) 제24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는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의 저작권을 인정하는지, 그 범위와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와 일정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기사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분석한다. 둘째, 판결에 나타난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의 특성은 어떠한가?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타 언론사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이견이 있는 만큼, 판결에 나타난 정당한 이용에 대하여 분석한다.

연구 자료의 검색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와 저작권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국회전자도서관’(<http://www.nanet.go.kr>) 등을 활용했으며, ‘언론보도와 저작권’, ‘언론과 저작권’, ‘보도기사와 저작권’ 등의 키워드를 이용했다. 검색 결과 영상물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반 언론과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는 문헌은 20여 편으로 나타났으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보도기사의 저작권 이슈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술논문은 참고문헌 목록에도 나타나듯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판결문 수집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http://www.scourt.go.kr>)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국내언론관계판례집’(1-14권) 등을 활용했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검색에는 ‘언론 저작권’, ‘미디어 저작권’, ‘보도 저작권’ 등의 여러 검색어를 입력했으나, 음반 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등과 관련한 다수의 사례 외는 보도기사의 저작권 논의와 관련하여 직접 인용할 만한 판례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외국 사례와 선행연구의 검색을 위해서는 Westlaw(<http://www.westlaw.com>)의 논문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였으며, 보도기사 저작권 원조 사례라 할 수 있는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⁶⁾를 비롯하여 “hot news”, “news copyright” 등의 용어를 입력, 1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확보했다.

6) 248 U.S. 215(1918).

그러나 대부분의 *Law Review*나 *Law Journal* 논문이 INS 사례를 인용하면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디지털 기술의 저작권 이슈 등과 같은 본 논문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논문이어서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언론학보』 및 『방송학보』 등의 전문학술지도 2차 자료의 검색 도구로 활용했다.

2. 한국 저작권법과 베른국제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57년 처음 제정된 한국의 저작권법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양상에 따른 국내의 창작활동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저작권 인식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 말하자면, 정신노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물에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를 부여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의 문화적 풍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한승헌, 1992). 한편 여기에서의 창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⁸⁾로서 타인의 저작물에 의한 것이 아닌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창작물이어야 한다(Miller & Davis, 1983).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에는 첫째, 소설과 시를 비롯한 논문, 각본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둘째, 음악저작물, 셋째, 연극과 무용, 무언극을 포함한 연극저작물, 넷째, 회화와 서예, 조각, 공예, 그리고 응용미술저작물을 포함한 미술저작물, 다섯째,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여섯째, 사진저작물, 일곱째, 영상저작물, 여덟째, 지도와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을 포함한 도형저작물,

7) 저작권법 제1조(목적).

8)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마지막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번역이나 편곡, 각색을 통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물로 간주된다.

이처럼 저작권법이 광범위하게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다. 동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및 결정, 명령, 심판 등은 보호 대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리고 공개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일단 특정 저작물이 저작물로 인정이 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⁹⁾과 저작재산권¹⁰⁾이 포함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특히 저작 재산권은 소위 ‘공정이용’의 목적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6절은 저작재산권의 배타적 권리가 제한받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를 비롯하여 학교교육, 시사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과 같은 목적의 복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24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25조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9) 저작인격권은 제11조의 공표권, 제12조의 성명표시권,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 등을 포함한다.

10) 저작재산권은 제16조의 복제권, 제17조의 공연권, 제18조의 방송권, 제18조 2의 전송권, 제19조 전시권, 제20조의 배포권, 제21조의 2차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포함한다.

고 인용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제26조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나 방송의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을 특별한 허락을 득하지 않고도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1조 1항은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자체 수단으로 영상 저작물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지만, 방송권자의 허락을 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4조는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을 인용할 시에는 출처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명이 사용된 경우)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 국제법이라 할 수 있는 베른협약 역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이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에는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서적, 소책자 및 기타 문서, 강의·강연·설교 및 기타 같은 성격의 저작물, 연극 또는 악극 저작물,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작곡, 영화와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상저작물, 소묘·회화·건축·조각·판화 및 석판화,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해·지도·설계도·스케치 및 지리학·지형학·건축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 저작물과 같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이 포함된다. 하지만 시사 보도나 단순한 언론보도는 한국법과 마찬가지로 베른협약 역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중에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인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해야 하고,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을 인용하는 경우,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육 목적의 문학과 예술 저작물의 사용도 정당화된다. 또한 “경제·정치 또는 종교적인 시사문제에 관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기사 및 같은 성격의 방송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되거나, 방송되거나, 유선으로 공중에 전달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명확한 출처의 표기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기사의 보도를 위한 문학, 예술 저작물의 인용도 보도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와 배포가 허용된다. 이 모든 것들은 협약에 가입한 동맹국의 법에 따라 조율될 수 있다.

3.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보도기사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1918년 판결인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 대 ‘AP 통신’(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¹¹⁾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전쟁기간 검열 법(wartime censorship law)’에 대한 허스트(Hearst)의 비판적 태도에 못마땅한 영국 정부가 허스트의 자회사인 INS의 정부소유 뉴스 송신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전쟁뉴스를 미국에 제때 공급할 수 없게 된 INS는 경쟁상대인 AP 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400여 독자회원사에게 마치 자신들의 작성한 기사인 것처럼 공급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AP는 INS의 이러한 행위가 상업적 가치를 유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misappropriation)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NS는 통신사가 뉴스를 한 번 공급하고 나면 그 뉴스에 대한 통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며, 그 뉴스에 접근 가능한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우선 뉴스를 “최근 발생하는 사건(occurrences)의 보도”라고 정의하고, 뉴스 자체(facts)로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뉴스기사(article)로 완성되었을 때는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특히 뉴스기사는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뉴스의 독특한 가치는 뉴스가 신선(fresh)할 때 배포되는 것이고, 이른바 ‘핫 뉴스’(hot news)일 때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출판과 동시에 뉴스는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의

11) 248 U.S. 215(1918).

공공 소유가 되어 사적인 재산권은 보도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뉴스의 사실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지만, 그 뉴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은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뉴스를 구성하는 사실(facts)을 갖고 소유권이나 영역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것은 마치 교환되어지는 증권과 같아서 기업에 의해 수집되어 노동과 자본이 투자 되었을 때 뉴스라는 상품으로 생산되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재산권이나 소유권이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뉴스가 재산권적 가치를 갖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정교한 조직(organization)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과 기술, 노력 등을 요구한다. 또한 언론사는 뉴스의 진귀성(novelty), 신선도(freshness), 서비스의 정규성(the regularity of the service), 신뢰도(reputed reliability), 완벽성(thoroughness), 그리고 공공의 필요에 적응하는 능력(the adaptability to the public needs)에 따라 교환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상품으로서의 뉴스는 재산이다. 뉴스를 생산하는 데 비용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뉴스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 즉, 뉴스 가치의 주된 요소들은 뉴스의 진귀함(novelty)과 뉴스의 정확성, 그리고 뉴스에 관심을 갖고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있는 곳에 뉴스의 존재 등이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때문에 만약 특정 언론사가 사건의 발생을 확인하고 상업적 가치를 갖는 뉴스로 전환시킨다면, 그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갖지만, 노동과 자본의 투자 결과로 생산된 뉴스를 전용하거나 상업적 가치를 착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¹²⁾

타 언론사의 뉴스를 인용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재판부가 언급했다. 첫째가 특정한 뉴스기사를 재구성(rewriting)하거나 혹은 재구성 없이, 말하자면 독립적인 취재 없이 무단으로 인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12) 재판부는 *Bleistein v. Donaldson*, 118 U.S. 239(1903) 사례를 인용했다.

경쟁사의 뉴스를 취재의 팁(tips)으로 이용하고, 독립적인 취재를 하는 경우인데, 이 둘의 비교를 통해 허용될 수 있는 언론행위와 위법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상대 언론사의 뉴스를 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치 incurable)의 언론행위 이긴 하지만 허용될 수 있고, 독립적인 취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크레딧을 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쟁 언론사의 뉴스를 복사하여 하나의 상업적 상품으로 자사의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그 뉴스가 자사의 독립적인 취재의 결과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게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P의 뉴스 기사는 AP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로 산출된 것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받을 수 있는 준재산권(quasi-property)에 해당한다.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뉴스를 취재하는 것은 뉴스의 취재와 배포를 전문으로 하는 통신사에게 뉴스는 반드시 준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권리를 독립적인 취재와 조사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유용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AP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AP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자 INS가 AP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배포하여 AP가 누려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INS의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된 법적 이슈를 분석했다. 첫째, 뉴스 속에 재산권적 가치가 포함되어있는지, 둘째, 만약 출판될 목적으로 수집된 뉴스에 재산권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출판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셋째, INS가 AP의 뉴스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자사의 고객에게 마치 자신의 뉴스인 것처럼 전달한 상업적 이용이 불공정경쟁을 구성하는지 등이다. 또한 AP 뉴스의 상업적 가치가 유용(misappropriation)되었는지를 판단하면서, 해당 뉴스가 시간적으로 민감한(time sensitive) 성격을 띠고 있는지, 뉴스의 제작에 상당한 노동과 자금이 투자되었는지, AP와 INS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INS의 무단전재 행위가 AP의 상업적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의 여부를 따졌다.

위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재판부는 INS의 무단전재 행위가 AP 뉴스의 재산권적 가치를 유용했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법원은 뉴스기사가 보도되었을 경우 그것은 공공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유용이 아니라는 INS의 주장을 거절하면서, 비록 공공이 그 뉴스에 대한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경쟁자인 INS는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뉴스는 준재산권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수의견과는 달리 반대 의견을 낸 브랜다이스(Brandeis) 판사는 뉴스 생산을 위해 노동과 비용, 기술 등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반박했다. 뉴스를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비용의 지출이 반드시 재산권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고, 일반인이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사실이 법적인 재산권의 성격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INS의 무단전재 행위는 AP와 경쟁적인 관계에서 옳지 않은 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AP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가 법적인 측면에서 불공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견인 준재산권의 유용(appropriation) 원칙은 그릇된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홀름(Holmes) 판사도 INS의 무단 배포행위를 금지시키는 다수의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브랜다이스 판사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뉴스가 경제적 교환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적 가치를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재산권 원칙에 입각하여 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INS 판례가 있기 전에는 뉴스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as free as air)으로 간주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으나, 대법원의 INS 결정을 통해 취재와 보도행위들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INS 판결은 뉴스 인용의 불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왔으며, 그 뒤 결정된 몇몇 사례를 통해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에 대한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

라디오 방송국이 통신사의 뉴스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문제가 된 경우에도

INS 기준이 적용되었다. Associated Press v. KVOs¹³⁾ 사례에서 연방항소법원은 AP통신의 뉴스가 회원 신문사 고객들에게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라디오방송국이 AP뉴스를 문자 그대로 방송(read verbatim)하는 것은 AP의 상업적 가치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취재와 보도행위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INS의 이론을 보다 정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뉴스가 아직 신선한 경우, 다시 말하자면, 뉴스가 시간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재산권적 가치가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켄터키 항소법원은 타 언론사의 뉴스를 허락 없이 보도해도 무방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경쟁사의 뉴스가 보도되어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 16~18시간, 이 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뉴스가 보도된 후 적어도 20시간은 지나야 가능하다고 판결했다.¹⁴⁾

뉴욕항소법원 역시 뉴스가 재산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무단으로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¹⁵⁾ 특히 원고의 권리는 저작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뉴스가 자본과 기술의 투자, 그리고 노력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라며, 저작권과 사실적 뉴스보도의 관계를 설명했다. 뉴스 자체에 포함된 정보 자체와 저자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용어 집합의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저자의 사건에 대한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그러므로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합법적인 저널리즘의 핵심은 사건의 진전이나 객관적인 사실의 보도에 있지, 뉴스 소스에 의해 사용된 표현형태의 착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강조했다.

이 밖에 펜실베이니아 대법원도 같은 지역 내의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신문

13) 80 F.2d 575(9th Cir. 1935).

14) Madison Publishing Co., Inc. v. Sound Broadcasters, Inc.(unreported 1966).

15) Bond Buyer v. Dealers Digest Publishing Co., 267 N.Y.2d 944(1966).

기사를 무단으로 방송하는 것은 불공정경쟁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INS 사례에서 정립된 뉴스의 재산권적 가치 기준을 재확인했다.¹⁶⁾

보다 최근에는 INS 판결이 스포츠 경기의 데이터 서비스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번 핵심 사례가 되었다. 1997년도 ‘미국농구협회 대 모토로라’(NBA v. Motorola)¹⁷⁾ 사례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모토로라가 제공하는 스포츠 데이터 서비스는 미국 프로농구를 관장하는 NBA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농구 게임 자체로서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게임을 중계하는 방송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문제가 된 모토로라 서비스는 게임을 중계하는 방송의 내용을 복제한 것이 아니고,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는 사실적 데이터를 통계 형태의 자료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타 언론사의 뉴스보도를 무단전재하거나, 각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통신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비록 NBA 스스로 실시간 스포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역시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경쟁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는 시사보도의 저작권침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스포츠 중계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데이터 서비스의 저작권 부여 여부를 다루고 있어서 INS 판결이 데이터 서비스 영역에도 구속력을 갖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한국 법원의 보도기사 관련 저작권 판결

한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도기사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빈번

16) Pottstown Daily News Publishing Co. v. Pottstown Broadcasting Co., 192 A.2d 657 (Pa. 1963).

17) 105 F.3d 841.

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까지 도달한 경우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과를 받는 수준, 혹은 비윤리적 행위라며 비판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서 보도기사의 저작권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언론보도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1989년 잡지사 간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이 사건에서 『월간현대』의 기자가 문익환 목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가정조선』의 “문익환 가의 사람들”이란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기사화했다. 기지는 문 목사의 가문과 가족관계, 민주화투쟁과정, 수감생활 등을 다루면서 『가정조선』 기사의 관련 귀절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원 기사의 약 60~70% 정도를 표절하여 작성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등이 포함된다고 전제한 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재제하는 경우라면 그것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가정조선』에 게재된 글은 문 목사의 가족관계 등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고도의 독창성이나 창작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 일부를 표절하여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19. 선고 88나29391 판결)는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결정을 내린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이 사례에서 월간 잡지인 『직장인』과 『뷰티라이프』가 일본 시사주간지 『플래시(FLASH)』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당사자 승낙 없이 인용, 게재하면서 “한국 여대생, 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사진 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략” 등의 원래의 제목과 다른 제목을 붙여 게재했다.

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저작물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제24조 자유이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시사보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기사에 포함된 사진의 색상, 크기, 배치 등의 성격으로 보아, 비평기사가 아닌 사진 감상을 위한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기사를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정당한 범위를 규정했다. 즉, 저작물의 인용이 기사의 본 취지를 뒷받침하는 보조적 기능에 머물러야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그 인용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일본 사진전문잡지에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이 실렸다고 보도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잡지에 게재된 사진 중 일부를 인용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잡지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잡지의 상업성을 충족시키고자 한국작가의 사진 예술을 악용하였다”는 비평과 논평을 가한 것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도덕과 미풍양속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진을 인용, 게재하는 것은 시사보도 과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보도나 비평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는 결국 작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었다(서울고등법원 1990. 2. 13. 선고 89나32908 판결).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도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판83238). 이 사례는 포항시를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경상매일신문』이 진주시에 『신경남매일』이라 신문을 창간하여 운영하면서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전재하고, 제목과 일부 내용 등을 침삭·게재하면서 발생하였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가 작성, 배포한 기사를 『신경남매일』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편집하여 게재한 것은 연합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보도기사의 저작권 보호의 적법성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자사 소속 기자들이 연합뉴스의 기사에 자신의 이름을 명시하여 게재한 것은 신문사와 무관한 것으로 신문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신문사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신문사는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이는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¹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자들을 고용한 『신경남매일』은 사용자의 신분이며, 따라서 소속 기자들의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단전재는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소속 기자들의 이러한 위법 행위로부터 신문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5년, 서울중앙지법은 또 한번의 언론사 간 저작권침해 소송 사례를 판결한다. 이 사례는 연합뉴스가 작성, 배포한 보도기사를 경쟁 통신사인 뉴시스가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전재하면서 발생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1005. 10. 13. 선고 2005가합10390 판결).

재판부는 우선 뉴시스가 무단전재한 기사들을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와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이 포함된 창작성이 인정된 기사로 구분하여 판단하면서, 저작권법 보호의 요건인 창작성을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대법원의 2005년 판결을 인용하여 정의했다. 즉,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성 기준을 토대로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와 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

18) 대위침해는 직책이나 지위, 신분상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부하직원 등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Eclavea, R. P. (1973). Annotation, liability as vicarious or contributory infringer under federal copyright act. *American Law Report*, 14, p. 825. 참조

게 했다는 등을 전하는 짧은 기사,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사” 등은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 구속 등과 같은 수사업무와 관련된 기사, 단일한 사건의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 법원의 판결에 관한 기사 등은 비교적 길이가 짧은 표현을 사용하고, 그 표현도 지극히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재판부는 보았다. 말하자면, 이러한 유형 “기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의 선택, 배열 등에 있어 특별한 순서나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독립적인 취재를 통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발표나 보도자료 등에 의존하여 간단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그 작성자가 다양한 표현방법 중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보도기사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즉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된 사실을 기초로 한 기자의 비판이나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야 하며, 그 수집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되어야만 기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중앙지법과 마찬가지로 뉴시스의 저작권침해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침해기사와 피침해기사 간의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복제권 침해의 판단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원저작물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고 판단된다면 이 역시 실질적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에서는 뉴시스 기자가 연합뉴스 기사의 구체적인 표현이나 어휘선택 등에 “다소 변경을 가하고, 문장들의 배열 순서를 앞뒤로 바꾸거나, 원고의 기사 중 일부 문장을 생략하는 등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연합뉴스 기사 중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그대로 전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사의 톤과 전개과정에 있어서 동일성이 감지”되므로, 침해기사와 피침해 기사는 실질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2006년 대법원도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또 한 차례 중요한 판결을 내놓는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¹⁹⁾ 이 사건에서 ○○신문은 “시세차익 노린 위장전입 장서리 ‘동의할 수 없다’ 정면 반박”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연합뉴스의 “장서리 위장전입 의혹 논란” 기사를 복제하여 전채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전채하여 보도했다.

대법원은 우선 저작권법 제7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문이 복제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무르는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 경제계의 동향을 비롯하여 연예, 스포츠, 사건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의 사실이나 정보를 “언론매체의 정형적이

19) 원심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참조.

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이를 복제하여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복제된 연합뉴스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 시사보도 저작물과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용 범위에 관한 논의

시사보도에 대한 저작권법의 연관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보도기사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시사보도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단순한 사실적 정보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창적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도의 창작성을 담보하고 있는 문학, 예술, 학술 저작물의 어느 것보다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러한 법리가 잘 드러나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첫째, 시사보도는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정형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둘째, 개성 있는 독창적 표현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사실의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창작성을 갖지 못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급심도 보도기사의 저작물 판단 여부를 결정하면서 기사의 소재나 용어의 선택, 문장 속에서의 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 그리고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저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facts)만을 전달하는 시사보도가 과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저작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보도기사가 증가하고 있고,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 사실보도로 판단된 기사를 단순한 사실전달 기사로 또 한 번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시사보도가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의 정형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사실이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간명하고 절제된, 그리고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 글로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이 보도기사이니 만큼, 창작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기사가 하더라도 기사 주제의 선정과 이를 효과적으로 기술, 전달하기 위한 용어의 선택과 문장의 배열 등은 지적 창작활동으로 보아야 하며(Middleton & Chamberline, 1991; Tomlin, 1991), 여기에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특히 문장 속에서의 단어의 선택과 배치는 집약된 창작적 고민의 결과이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는 투입된 창작성을 반영하여 읽힌다.

객관적인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배열은 의미적으로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수 있겠으나, 창작성이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저작권법의 창작물로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도기사가 갖는 학문적·예술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보도사진을 저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 보도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앵글이나 클로즈업, 노출 등의 사진 기술을 통하여 촬영, 작성되기 때문에 예술적 창작성을 인정받게 된다. 보도기사와 보도사진의 차이가 있다면, 보도기사는 특정한 사실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고, 보도사진은 그 사실을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을 뉴스로 표현한 보도기사를 창작물로 법적 보호 대상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신적 창작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과도 논리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연방 대법원이 INS 판결을 통해 분명히 밝힌 것과 같이 뉴스를 구성하는 사실 자체를 두고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뉴스는 마치 증권처럼 언론사의 노동과 자본이 투자되어 뉴스라는 상품으로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뉴스는 재산권이나 소유권이 주장될 수 있으며, 그것이 갖는 진귀성, 신선도, 신뢰도, 완벽성 등에 따라 교환의 가치를 갖게 되며, 언론사는 자연스레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뉴욕항소법원이 Bond Buyer 판결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며, 저작권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전화번호부와 같은 편집물도 그것이 갖는 구성과 디자인, 번호의 배열 등으로 인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Eckes v. Card Prices Update).²⁰⁾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 중 하나는 미국의 사례는 주로 저작 작품의 재산적 가치만을 다루고 있는

20) 736 F.2d 859(2d Cir. 1984).

반면, 한국 사례에서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저작권법에도 저작자의 의사와 반하게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덕적 권리(moral rights)를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Henn, 1988), 저작권을 재산적 가치로 보는 경향이 강해(Joyce, Leaffer, Jaszi, & Ochoa, 2003), 도덕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격권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원 기사를 무단전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재된 기사의 내용에 근거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두 나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INS 판결 이후 보도기사의 저작권을 인정해오는 미국 법원의 일관된 법리는 두 나라의 법체계와 저작권 보호 문화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한국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보도기사의 저작성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최근 추세를 볼 때 INS 법리가 갖는 한국적 함의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의 저작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저작물이 갖는 창작성의 완결성에만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자의 재산권적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는 주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창작성뿐만 아니라 투자와 지적 노력의 결과로 산출된 뉴스 상품이 갖는 재산적 가치도 저작물의 법적 보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시사보도가 법적 보호 대상 저작물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대해서도 심층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저작권법 제24조는 언론이 시사보도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언론보도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과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법적 보장이다. 그러나 시사보도를 위하여 타 언론사의 시사보도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논쟁거리임에 틀림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인 응답자의 51.4%가 타 언론사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다수는 여러 차례에 걸친 무단 전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김경호, 2003). 또 응답자의 59.6%는 보도기사의 저작권 보호가 창의적이고 심층적인 뉴스 작성을 돕는다고 응답했다. 무단 전재가 관행처럼 여겨지고, 절반이 넘는 언론인이 이러한 관행에 따라 무단전재 행위를 하고 있지만, 언론인 스스로도 보도기사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타 언론사 보도기사를 인용하는 유형에는 첫째,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둘째, 해당 뉴스를 취재의 팁(tips)으로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셋째, 독립적인 취재 없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표절하는 경우 등이다. 첫 번째 경우는 제25조의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행위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타 언론사 기사를 취재 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치(incurable)의 언론 행위이긴 하지만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원 기사를 취재의 팁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기사작성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 활용의 정도가 질적·양적으로 지나친 경우는 법적 보호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원 기사의 핵심이 되는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거나, 원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흡사하게 베끼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질과 양의 상당성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회통념상 시사보도의 관행이나 보도의 목적상 상당한 범위 안에서 타 언론사의 보도기사의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며, 원 기사의 핵심이 되는 표현 부분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기사의 톤과 전개과정에서 동일성이 감지된다면 사회통념이나 시사보도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종적 관계에 머무른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 경우는 저작권법 제24조와 제25조 어느 조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 독립적인 취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크레딧을 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INS 재판부가 판시한 것처럼, 타 언론사의 기사를

복제하여 하나의 상업적 상품으로 자사의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그 뉴스가 자사의 독립적인 취재의 결과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 기사가 갖는 상업적 가치를 유용(misappropriation)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그 이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시사보도의 목적에 맞게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지, 출처를 밝히지 않는 무단전재까지도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공정 이용의 판단기준인 ‘이용의 목적’, ‘인용된 저작 작품의 성격’, ‘인용된 범위’, ‘이용이 저작 작품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송영식·이상정, 2003; Overbeck, 2005)을 적용해보면, 무단전재 행위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용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뉴스보도에 타 언론사의 보도기사의 무한정 이용이 허용된다면 굳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기사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단전재는 부종적인 지위에서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용한 목적도 영리의 목적으로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서울지방법원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6. 맺는말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시사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나 자료들을 수집 정리한 편집저작물도 저작권법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무단전재가 위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있어야 되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법 제7조 5항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보호의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칫 모든 타 언론사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바로 이 조항이 무단전재의 합법성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될 수도 있다.

보도기사를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 조항으로 규정한 본래의 목적은 특별한 창작성보다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대중매체의 사회적 기능을 진작시키기 위함이다(김기태, 2000; 지성우·김영욱 2005). 하지만,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 기술과 자본, 노력 등이 투자되어 생산된 뉴스의 배타적인 상업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언론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뉴스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재산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여러 단계의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제작된 보도기사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INS 판결이 오랜 동안 사회적 동의로 여겨져온 것을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언론인 역시 보도기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심층적인 뉴스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조사도 보도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

마찬가지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4조에 대해서도 보충적 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언론 환경은 보다 경쟁적으로 바뀌고 있고, 보다 많은 언론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제24조는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즉 어디까지를 수인될 수 있는 정당한 범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면책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언론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재판부에서 시사보도를 위해 이용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정당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명시적인 단서 조항을 통해 무단전재의 위법성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저작권법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본 연구는 타 언론사 보도기사의 무단전재 행위로 인한 법적·윤리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도기사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를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선행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를 보도기사의 저작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미디어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 포털의 보도기사 링크를 포함한 언론보도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등에 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 강을영 (1997. 10. 1). 제주일보 기명칼럼 표절. 『미디어 오늘』.
- 김경호 (2003).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 타 언론사 보도기사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한국언론학회 2003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기태 (2000).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삼진기획.
- 김상만 (2005. 7. 29). 노컷뉴스, ‘한인 토막살인’ 기사 무단사용. 『미디어 오늘』.
- 민임동기 (2000. 8. 3). 지방지, 기사 베껴쓰기 여전. 『미디어 오늘』.
- 박인환 (1999). 언론과 저작권: 영상제작물과 저작권. 『저널리즘비평』, 28권, 58~64.

- 박형상 (1993). 언론보도와 저작권. 『계간저작권』, 24권, 22~28.
- 방석호 (1999). 언론과 저작권: 매스컴환경 변화와 저작권. 『저널리즘비평』, 28권, 36~43.
- 송영식·이상정 (2003). 『지적재산법』. 서울: 세창출판사.
- 안상운 (1999). 언론과 저작권: 보도기사와 저작권. 『저널리즘비평』, 28권, 50~58.
- 연합뉴스 (2004). 『신문·방송사의 연합뉴스 크레딧 표기 현황 조사 결과』. 서울: 연합뉴스.
- 윤성환 (1999. 11. 11). 연합뉴스 타사 기사 표절. 『미디어 오늘』.
- 윤희창 (1989). 언론보도와 저작물 이용의 한계. 『계간저작권』, 1989년 겨울호, 통권8권, 36~42.
- 이영태 (2001. 4. 11). 한겨레, 조선일보 사설 표절. 『미디어 오늘』.
- 지성우·김영욱 (2005).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승헌 (1992).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서울: 나남.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6. 선고 2006나23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 8. 31. 선고 98나254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 2. 13. 선고 89나3290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가합1039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판8323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19. 선고 88나29391 판결.
- Eclavea, R. P. (1973). Liability as vicarious or contributory infringer under federal copyright act. *American Law Report*, 14, 825~868.
- Goodwin, E. (1983).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 우병동 역 (1997). 『언론 윤리의 모색』. 서울: 한나래.
- Henn, H. G. (1988). *Copyright law: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NY: Practicing

Law Institute.

Joyce, C., Leaffer, M., Jaszi, P., & Ochoa, T. (2003). *Copyright law* (6th ed.). Newark, NJ: LexisNexis.

Middleton, K. R. & Chamberline, B. F. (1991). *The law of public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NY: Longman.

Miller & Davis (1983). *Intellectual property*. St. Paul, NY: West Publishing.

Overbeck, W. (2005).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Peterson, G. R. (1992), Trade secrets in an information age. *Huston Law Review*, 32, 385~456.

Rahl, J. A. (1962). The right to appropriate trade values. *Ohio State Law Journal*, 23, 56~73.

Steinberg, J. (2003. 5. 29). Times reporter steps down amid criticism. *New York Times*, 20.

Tomlin, D. H. (2001). SUI generis database protection: Cold comfort for 'hot news'. *Communications Lawyer*, 19, 15~20.

Bleistein v. Donaldson, 188 U.S. 239 (1903).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 215 (1918).

Associated Press v. KVOB, 80 F.2d 575 (9th Cir. 1935).

Eckes v. Card Prices Update, 736 F.2d 859 (2d Cir. 1984).

NBA v. Motorola, 105 F.3d 841 (1997).

Pottstown Daily News Publishing Co. v. Pottstown Broadcasting Co., 192 A.2d 657 (Pa. 1963).

Bond Buyer v. Dealers Digest Publishing Co., 267 N.Y.2d 944 (1966).

Madison Publishing Co., Inc. v. Sound Broadcasters, Inc. (unreported 1966).

(최초 투고 2007.6.1, 최종 원고 제출 2007.8.2)

A Study on the Property Values of News Articl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Gyong-Ho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Cheju National University

Facts, which constitute news, are as free as air. When they are transformed into news via labor and capital investment of a news organization, the news is deemed to have property values, and the media can claim exclusive rights over the news. The copyright law protects the originality of a work, the uniqueness of reporter's analysis, the selection of words, the arrangement of materials, and the emphasis given on particular points. The name of the game of copyright infringement lies in the infringement of the similarity of the method of expression, not the infringement of the subject. Even though news articles convey information by specifying factual elements of an event or accident, they still have some originality. The judgement that news articles lack of originality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Therefore,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articulate that the unauthorized use of news articles without a proper citation shall be the subject of legal action, and courts should decide related cases accordingly.

Key words: copyright of news articles, property values, exclusive rights, copyright infringement, fair use